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988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요	3
2.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5
3.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	1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개요

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離職)¹⁾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실업급여²⁾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또 조기(早期)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뉨.

<그림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현행

- 1)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2)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법상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단기 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고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2021년 9월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여기에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①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자의 구직급여를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②반복수급자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며, ③자발적 이직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한 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 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는 경우 3회 이상부터 구직급여일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때의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①</u> <u>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77조의8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u> <u>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u>

제49조(대기기간)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훈수급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4. 제50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

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⑦·⑧ (생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생략)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안 제46조의2 신설),

②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2호, 제77조의3제6항제3호, 제77조의8제6항제3호).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급여일액 감액에 대해서는(안 제46조의2), 수급자격자가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감액하되(안 제46조의2제1항), ①⁻¹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안 제46조의2제2항제1호), ①⁻²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안 제4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①⁻³소정급여일수³⁾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⁴⁾ 수준

3)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함.

4)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뜻함. 현행법상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안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액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안 제46조의2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부터 최대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86,000명에서 110,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전체 수급자수 대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3회	4회	5회 이상
2019	1,443	1,075(74.5)	282(19.6)	86(5.9)	58(4.0)	15(1.0)	13(0.9)
2020	1,703	1,283(75.3)	327(19.2)	93(5.5)	65(3.8)	16(0.9)	13(0.7)
2021	1,774	1,329(74.9)	345(19.4)	100(5.7)	71(4.0)	17(0.9)	13(0.7)
2022	1,631	1,194(73.2)	334(20.5)	102(6.3)	72(4.4)	17(1.1)	13(0.8)
2023	1,672	1,197(71.6)	364(21.8)	110(6.6)	78(4.7)	18(1.1)	14(0.8)
2024. 7.	1,261	904(71.7)	276(21.9)	81(6.4)	59(4.6)	13(1.0)	10(0.8)

※ 1) 괄호 안 수치는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단기취업 등의 왜곡된 고용관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에 다른 고용보험 재정수지 개선 효과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안 제46조의2제2항제4호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사유를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근로자 등에게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예시 규정으로 하는 방안과 나열규정으로 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예수인·노무제공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3호, 제77조의3제6항제4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4호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대기기간)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생략) 2. (생략) 3.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생략)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제69조의9(준용) ① -----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

-----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⑦ · ⑧ (생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략)

4. 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 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별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사 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⑦ ⑧ (생략)	⑥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생략) 4. <u>기준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로서</u> <u>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u> <u>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u> <u>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u> <u>로 이직하고 그 이직한 사업에</u> <u>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u> <u>미만인 경우</u> ⑦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지
급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제 보수가 지급

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⁵⁾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⁶⁾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직한 사업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이때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⁷⁾,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되⁸⁾,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 대기기간이 지난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됨⁹⁾.

그런데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례처럼(<그림 2> 참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이직 사유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을 우회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5) 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7)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⑤ (생략)

8)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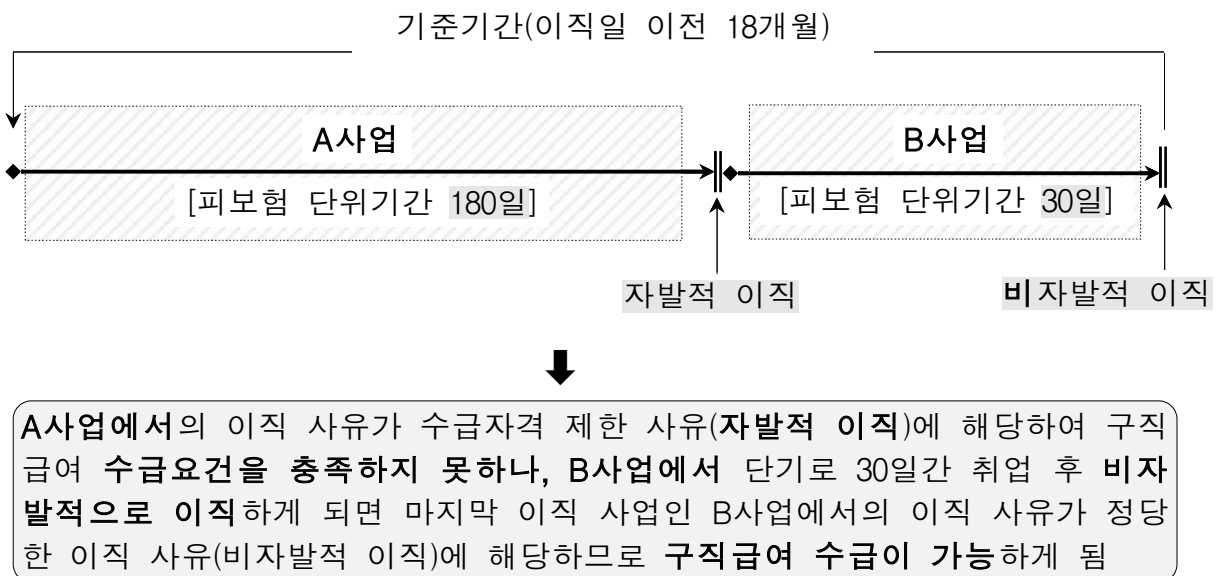
② ~ ④ (생략)

9)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서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기준기간 동안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사업에서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현행처럼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로 연장하여 그 지급을 유예하려는 것임¹⁰⁾.

<그림 2>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사례(1)



이를 발생 유형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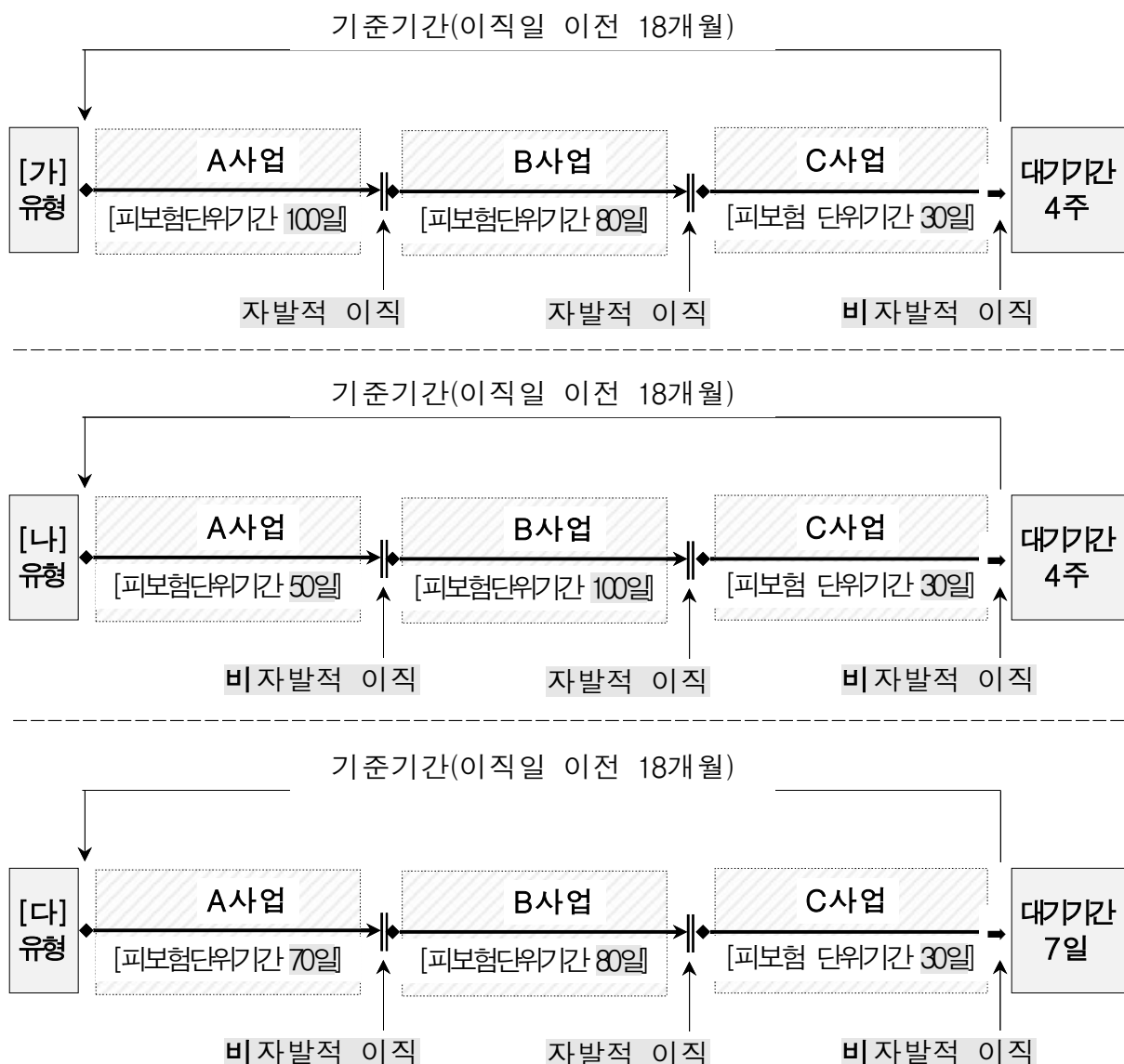
[가]유형 및 [나]유형처럼 마지막 이직 사업(C사업)에서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을 했더라도 기준기간 동안 자발적 이직이

10) 개정안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많아, 비자발적 이직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이 되지 않게 되면([가]유형은 C사업 30일, [나]유형은 A사업 50일 + C사업 30일 = 80일), 이들은 대기기간 4주 유예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다]유형과 같이, 자발적 이직 사업(B사업)이 있지만, 기준기간 동안 비자발적 이직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이 넘는 경우(A사업 70일 + C사업 30일 = 100일), 이들은 현행과 같이 대기기간 7일 유예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됨.

<그림 3>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사례(2)



개정안은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뒤 비자발적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직급여 신청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통상의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데, 이들 외에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는 기준기간 동안 자발적 이직 사실이 있으면 그 기준기간 중 90일 이상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 일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규정¹¹⁾이 이미 시

1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 5. (생략)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생략)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생략)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 ⑧ (생략)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 (생략)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538
